



.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2019년 도서관 부분감사 결과



강진군
[기획홍보실]

2019년 도서관 부분감사 결과

I 감사 개요

1. 감사기간 : 2019. 9. 2.(월) ~ 9. 4.(수)까지 / 3일간
2. 대상기간 : 2017. 11. 1. ~ 2019. 07. 31. / 2년간
3. 감사반 : 5명
 - 통제관 : 기획홍보실장 임채용
 - 감사요원 : 4명

-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이재희
“	지방세무 6급	박영진
“	지방시설 6급	김근영
“	지방행정 8급	이이슬

II 총평

-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 동아리 운영, 쉬어가는 야외 365코너 책방 조성 등을 통하여 독서 생활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도서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발맞추어 업무추진 상 문 제점 파악,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함.
- 이번 부분 감사 결과 예산집행과목의 부적절한 적용, 공사·물 품 등의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징구를 소홀히 하였고,
- 또한, 각종 공사업무 추진시 완료검사 소홀, 하자보수보증금 확 약서 누락,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준수, 공사 지 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등 일부 업무연찬이 필요하였음.

Ⅲ 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0건

- 시정 2건, 주의 8건
- 재정상 조치금액 : 1건, 335천 원(부과 335)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0건	2	8	335		335	
1	회계분야	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2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관리 소홀		○				
3	"	지출결의서 서식 사용 부적정		○				
4	"	계약상대자(공사·물품 등) 대가지급 구비서류 소홀		○				
5	행정분야	도서관 망실·훼손자료 관리 소홀		○				
6	공사분야	도서관 공원 시설관리 위한 벤치수리 및 설치공사 완료검사 소홀		○				
7	"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확약서 누락	○					
8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335		335	
9	"	공사 등 계약 작성 소홀		○				
10	"	공사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				

VI 지적사항 요약

1. 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과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준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9건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독서 동아리 운영 시 강사수당과 물품구입, 어린이 문학기행 차량임차료는 행사운영비로, 웹서버 교체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지출한 사실이 있음.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카드의 보관·관리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도서관에서는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등 업무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지출결의서 서식 사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제3항 규정에도 언급하고 있음에도,

- 도서관에서는 200만원 이하에 대한 물품 구입 시 신용카드(인터넷 포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계약상대자(공사, 물품 등) 대가지급 구비서류 소홀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행안부 예규 제4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및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도서관에서는 2017년 10월 및 11월에 위 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미징구,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등 회계담당자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도서관 망실·훼손자료 관리 소홀

- 강진군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6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변상) 규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고 이

를 변상 대장에 기입한 후 1주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진군도서관 손·망실 및 불용자료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별도의 변상대장을 작성·기록하지 않고 KOLAS(한국도서관자동관리시스템)과 출력물(도서등록원부)에 단순히 분실·폐기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도서자료 관리담당자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도서관 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벤치수리 및 설치공사 완료검사 소홀

- 2018. 12. 19. (주)○○건설 ○○○와 「도서관 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벤치수리 및 설치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 공사 및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검사),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등의 규정에 의거 계약 이행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도서관에서는 위 건에 대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진대장만 확인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음.

7.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확약서 누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50조, 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 시 계약금액(3천만원 미만)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 도서관에서는 상기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확약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거 1,000천 원 이상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대금청구 시에는 100분의 2.5, 물품계약의 대금청구 시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하여야 함에도,
- 도서관에서는 상기와 같이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금액 335천 원을 미 소화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9. 공사 등 계약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도에 맞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승낙사항에 공사기간, 지연배상율, 담보책임 존속기간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 도서관에서는 위 사항을 누락한 채 계약서(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공사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 공사 계약 시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수하여 1000분의 0.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 도서관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한 상기 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배상금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